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관련 398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7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수 정 이 유

○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을 현장 상황을 반영토록 일부 개선함과 동시에 공용차량 전체를 부설주차장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주차상한제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과 안전 담보라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도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영차량 중 긴급차량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 바,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을 "200㎡"로, 〔별표 3〕 비고 제12호 중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로 별지와 같이 각각 수정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을 "200㎡"로 함(안 별표 3)

나.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비고에 제12호 중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로 함(안 별표 3 비고 제12호)

3. 참 고 사 항 : 생 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300㎡"을 "200㎡"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 3의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의원발의안)</th><th>수정안(교통위원회안)</th></tr>
<tr><td>〔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table><tr><th>시 설 물</th><th>최고한도</th></tr><tr><td>1. ~ 2. (생략)</td><td>(생략)</td></tr><tr><td>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td>시설면적 500㎡당 1대</td></tr><tr><td>4. ~ 8. (생략)</td><td>(생략)</td></tr></table>〈비고〉
1. ~ 11. (생략)
〈신 설〉</td><td>〔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table><tr><th>시 설 물</th><th>최고한도</th></tr><tr><td>1. ~ 2.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td>시설면적 300㎡당 1대</td></tr><tr><td>4. ~ 8.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able>〈비고〉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비롯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가 정해진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을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td><td>〔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table><tr><th>시 설 물</th><th>최고한도</th></tr><tr><td>1. ~ 2.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td>시설면적 200㎡당 1대</td></tr><tr><td>4. ~ 8.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able>〈비고〉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td></tr>
</table>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최고한도란 중 “500㎡”을 “200㎡”로 한다.

별표 3의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table><tr><th>시 설 물</th><th>최고한도</th></tr><tr><td>1. ~ 2. (생략)</td><td>(생략)</td></tr><tr><td>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td>시설면적 500㎡당 1대</td></tr><tr><td>4. ~ 8. (생략)</td><td>(생략)</td></tr></table>〈비고〉
1. ~ 11. (생략)
<u>〈신 설〉</u></td><td>〔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table><tr><th>시 설 물</th><th>최고한도</th></tr><tr><td>1. ~ 2.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td><td>시설면적 200㎡당 1대</td></tr><tr><td>4. ~ 8.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able>〈비고〉
1. ~ 11. (현행과 같음)
<u>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td></tr>
</table>